#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41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 박덕흠 · 김예지 · 김선교

이종배 • 유용원 • 조지연

고동진 · 서천호 · 강승규

김재섭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대형 산불 사고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최근 5년 간 피해액이 1조 8,3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산불은 피해면적과 화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산불이 확산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진화하는 것이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신고나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 발생 신고나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1천 만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지급 대상에 산불 진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도 추가하고자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96조).

#### 법률 제 호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산불 진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69조(포상) (생 략)	제69조(포상)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2. 산불 진화에 공로가 있는 사
	람이나 기관・단체
<u>2</u> . ~ <u>4</u> . (생 략)	<u>3</u> . ~ <u>5</u> . (현행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
<u>&lt;신 설&gt;</u>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u>&lt;신 설&gt;</u>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
	에서 지급한다.